

“선거로고송 사용 및 보전”관련 선관위 질의답변입니다.

## 제목 : 선거로고송 사용 대상 후보자 및 보전금액

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님 중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로고송을 사용하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 후보님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로고송을 사용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 듣고 후보자에게 공지하고자 합니다.

**질문 1.** 지방선거 후보자 중 로고송 사용제한 대상자가 있나요?

- 기초의원, 기초단체장, 광역의원, 광역단체장.

**질문 2.** 로고송 사용에 있어 곡 수 제한이 있나요?

최종답변 선거관리위원회

1. 문 1·2에 대하여

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

「공직선거법」상 제한되지 않습니다.

**질문 3.** 로고송 사용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률은 얼마인가요?

-예)1곡사용액82만5천원(제작비50만원,저작권료 12만5천원,인격권료 20만원)

-예)3곡사용액450만원(1곡당150만원)

최종답변 선거관리위원회

2. 문 3에 대하여

귀문의 경우 로고송 제작비용은 저작재산권료, 저작인격권료, 제작비로 구성되며

저작권재산권료의 보전금액은 시·도지사선거 1,000,000원, 교육감 및 구·시·군의  
장선거 500,000원, 시·도의원선거 250,000원, 구·시·군의원선거 125,000원이며,  
저작인격권료와 제작비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업체와의  
계약에 의한 실지금액이 보전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.

**질문 4.** 로고송에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- 후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(선관위 양식 포함)
- 제작업체가 증빙해 줘야하는 서류

(로고송 제작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이 3가지(제작비,저작권료,인격권료)로  
구분되며 각각의 비용 중 제작비는 당업체에서 받고 저작권료는  
한국저작권협회에서 인격권료는 곡을 제작한 작사 또는 작곡가에게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.  
이에 후보자의 로고송 제작 편의를 위해 당업체는 위 3가지 비용을 후보자에게 일괄  
청구하여 저작권협회 및 인격권자에게 무료로 납부대행을하고 있으며 위 3가지 금액에  
대해 당 업체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있습니다.)

최종답변 선거관리위원회

3. 문 4에 대하여

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로고송  
수량, 종류, 내용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Tel. 02-407-8417 Mail. [victory-777@naver.com](mailto:victory-777@naver.com)